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중장기증권투자신탁[채권]

□ **변경 사유** : ①운용전문인력 변경(양진모→ 전춘봉)  
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
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0. 7. 22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을 기재 및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0.5.31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책임운용인력 :양진모</u> <u>2020. 2. 29. 기준</u>	<u>책임운용인력 : 전춘봉</u> <u>2020. 6. 30. 기준</u>
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<u>책임운용인력 :양진모</u>	<u>책임운용인력 : 전춘봉</u>
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 2. 29. 기준</u>	<u>2020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<u>책임운용인력 :양진모</u>	<u>책임운용인력 : 전춘봉</u>
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 2. 29. 기준</u>	<u>2020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-	<u>2020.01.09~2020.07.21</u>
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		<u>: 양진모</u> <u>2020.07.22~현재 :전춘봉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관 한 사항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0.5.31 기준</u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<b>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
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 2. 29 기준	<u>2020. 6. 30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나. 주요 업무			
(3) 업무위탁			
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			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
가. 수익자총회 등			
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		
		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	- <u>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</u>

---

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 
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  
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  
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  
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  
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 
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  
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  
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
는 사항  
〈신설〉

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 
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  
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  
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  
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  
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 
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  
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  
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
는 사항  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 
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  
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 
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  
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  
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  
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  
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  
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  
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  
야 함  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 
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  
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 
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  
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  
시킨 경우  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  
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  
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 
변경에 동의한 경우  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 
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

---

---

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  
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  
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 
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  
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 
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  
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 
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  
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 
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 
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  
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  
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  
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  
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  
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
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  
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 
함

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 
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 
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  
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  
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 
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  
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 
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 
수 있음

---

---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	<u>한국예탁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에 관한 사항	변경사항 반영	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</u>	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</u>
가. 정기보고서		<u>방법으로</u>	<u>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</u>
(2) 자산운용보고서			<u>로</u>
(3) 자산보관·관리보			
고서			

---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	<u>한국예탁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에 관한 사항	변경사항 반영		
나. 수시공시			
(1) 신탁계약변경에 관			
한 공시			

---